

# 서 면 답 변 서

질의의원	우 강 호 의원	소 속	평창군의회
답 변 자	평 창 군 수 (환경복지과장)	일 자	질의 : 2000년 5월 25일 답변 : 2000년 5월 25일
회 의	제76회 평창군의회(임사회)제1차예결특위		
<p><b>【질의요지】</b></p> <p>○ 광역매립장사용 협약서 사본(보광.용평)</p>			
<p><b>【답변요지】</b></p> <p>○ 별      첨</p>			

- 평창군 위생매립장 사용에 관한 -

# 협 약 서

(갑) : 평 창 군



(을) : 주식회사 용평리조트  
대표이사 사장 홍 금



평 창 군



평창군농협  
연합회



평창군  
위생매립장

# 협 약 서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평창군(이하 "갑" 이라 칭한다)과 쌍용양회주식회사 용평리조트(이하 "을" 이라 칭한다)간 평창군 위생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칭한다)의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치 및 규모) 평창군위생매립장 설치규모는 다음과 같다.

- ① 위 치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734번지 일원
- ② 규 모 : 32,000㎡ (용량133,500㎡)
- ③ 사업비 : 5,000백만원 (매립장 안정화 단계 ⇒ 120억원 소요예상)

제 3 조 (납부금액)

- 1 "을"의 납부금액은 15억원으로 한다.
- 2 납부금은 매년 1월 30일한 "갑"이 지정하는 거래은행(농협) 구좌에 송금하여야 한다.  
단, 당해 연도는 매립장 사용개시일로 부터 30일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 3 납부 기간은 5년이며 매년 3억원씩 5회에 걸쳐 분할납부 한다.
- 4 부담금 미납시는 즉시 반입을 중단한다.

제 4 조 (운영관리)

- ① 평창군 위생매립장은 "갑" 이 운영·관리 한다.
- ② 반입되는 폐기물은 "을"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계 생활폐기물 에 한 한다.
- ③ 발생폐기물을 매립장까지의 수거·운반은 "을" 의 책임으로 한다.
- ④ 매립장운영 기간중 발생하는 유지관리비는 "갑" 의 책임으로 한다.

⑤ 매립장 반입료는 무료로 한다.

단, 대형폐기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한다.

⑥ "을"은 발생하는 폐기물에 자사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7. "을"은 발생하는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성상별(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목별 구분하여 매립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 제 5 조 (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대화위생매립장 준공후 사용개시일로부터 7년으로 한다.

② 협약종료 이후 사용은 현재 공모중인 평창군종합폐기물처리시설 기본설계후 조성사업비에 대한 납부금액을 재협약 한다.

제 6 조 (협의조정) 본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하며, 본계약의 해석상 의견이 발생시는 "갑"의 의견을 원칙으로 한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협약은 "갑" 과 "을" 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운영관리)의 사항은 위생매립시설 사용개시일로 한다.

제 2 조 본 계약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 과 "을" 은 협약서 2부를 작성. 쌍방이, 각각 1부씩 소지 한다.

2000 .



주식회사  
용평리조트  
대표이사

"갑" 평 창 군

김수희(인)

"을" 주식회사 용 평 리 조 트

대표이사 사장 홍 금



(인)

- 평창군 위생매립장 사용에 관한 -

# 협 약 서

(갑) : 평 창 군 수

(을) : 주식회사 보광휘닉스파크

대표이사 백 운 태

평 창 군



# 협약서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평창군(이하 "갑" 이라 칭한다)과 (주)보광 휘닉스파크(이하 "을" 이라 칭한다)간 평창군 위생매립장(이하 "매립장" 이라 칭한다)의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치 및 규모) 평창군위생매립장 설치규모는 다음과 같다.

- ① 위 치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734번지 일원
- ② 규 모 : 32,000㎡ (용량133,500㎡)
- ③ 사업비 : 5,000백만원 (매립장 안정화 단계 ⇒ 120억원 소요예상)

제 3 조 (납부금액)

- ① "을"의 납부금액은 11억원으로 한다.
- ② 납부금은 매년 1월 30일한 "갑"이 지정하는 거래은행(농협) 구좌에 송금하여야 한다.  
단, 당해 연도는 매립장 사용개시일로 부터 30일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납부 기간은 5년으로 하며 당해연도에 3억원을 납부하고, 다음 4년간 연2억원씩 분할 납부한다.
- ④ 부당금 미납시는 즉시 빈입을 중단한다.

제 4 조 (운영관리)

- ① 평창군 위생매립장은 "갑" 이 운영·관리 한다.
- ② 반입되는 폐기물은 "을"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계 생활폐기물 에 한 한다.
- ③ 발생폐기물을 매립장까지의 수거·운반은 "을" 의 책임으로 한다.
- ④ 매립장운영 기간중 발생하는 유지관리비는 "갑" 의 책임으로 한다.

⑤ 매립장 반입료는 무료로 한다.

단, 대형폐기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한다.

⑥ "을"은 발생하는 폐기물에 자사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⑦ "을"은 발생하는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성상별(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목별 구분하여 매립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 5 조 (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대화위생매립장 준공후 사용개시일로부터 7년으로 한다.

② 협약종료 이후 사용은 현재 공모중인 평창군종합폐기물처리시설 기본설계후 조성사업비에 대한 납부금액을 재협약 한다.

**제 6 조 (협의조정)** 본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하며, 본계약의 해석상 의견이 발생시는 "갑"의 의견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협약은 "갑" 과 "을" 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운영관리)의 사항은 위생매립시설 사용개시일로 한다.

**제 2 조** 본 계약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 과 "을" 은 협약서 2부를 작성.

쌍방이, 각각 1부씩 소지 한다.

2000. 3. 23



김민

김민

"갑" 평 창 군 (인)



"을" 주식회사 보광 휘닉스파크

대표이사 백 운 태



# 평창군 대화쓰레기위생매립장 사용에 관한 협약서

평 창 군

국립공원관리공단오대산관리사무소장



# 협 약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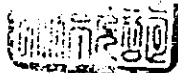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평창군(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관리사무소(이하 “을”이라 칭한다)간 '97년 10월 협약한 진부쓰레기위생매립장 공동조성협약에 대하여 갑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계획 변경으로, 진부쓰레기위생매립장 공동조성협약을 대화위생매립시설 사용으로 재협약을 위한 대화위생매립장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치 및 규모) 대화위생매립시설 설치규모는 다음과 같다.

- ① 위 치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734번지 일원.
- ② 규 모 : 32,000㎡(용량 133,500㎡)
- ③ 사업비 : 5,000백만원(평창군 4,500백만원, 공단 500백만원)

제 3 조 (부담금) “을”의 부담금은 '97년 진부위생매립장 조성사업 협약시 납부한 500백만원으로 한다.

제 4 조 (운영관리)



- ① 대화위생매립장은 “갑”이 운영·관리한다.
- ② 반입되는 폐기물은 평창군관내 오대산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만 한다.
- ③ 발생폐기물을 매립장까지의 수거·운반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 ④ 매립장 운영기간중 발생하는 유지관리비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 ⑤ 매립장 반입료는 무료로 한다. 단, 대형폐기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다.
- ⑥ “을”은 발생하는 폐기물을 분리수거함을 원칙으로 하고, 성상별(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목별 구분하여 매립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 5 조 (사용기간)

- ① 본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유효하며 대화매립시설 사용기간은 준공 후 관련법규에 의한 사용개시신고 수리일부터 사용종료시까지로 한다.
- ② 단, 사용개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간 쓰레기반입량 비율에 따라 사용기간을 추후 재협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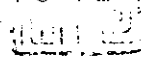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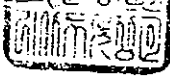
제 6 조 (추가사업) 현재 공모중인 평창군종합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은 기본설계 후 폐기물처리 시설조성 부담금을 협약하되 투자비용은 쓰레기반입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협의 조정)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하며,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발생시는 제반규정 및 행정선례에 의하여 "갑"과 "을"의 협약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협약은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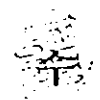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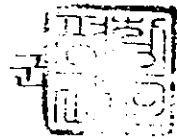
단, 재협약서 제4조(운영관리)의 사항은 대화위생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 수리일로 한다.



제 2 조 본 계약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협약서 2부를 작성, 쌍방이 각각 1부씩 소지한다.

1999.

"갑" 평 창



"을" 국립공원관리공단오대산관리사무

